

파인만 스타공모주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

효력발생(예정)일: 2021년 08월 03일

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 변경

1) 클래스 신설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 명칭	클래스 신설	-	(신설) 종류 S 가입자격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
6. 나. (2) 수익증권 종류별 차이점			선취/후취판매수수료: (후취)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.15% 이내
11. 가. (2) 종류별 가입자격			환매수수료: 30 일미만: 이익금의 70%, 90 일미만: 이익금의 30%
11. 나. (3) 환매수수료			보수: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		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40%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27%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2%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15%
			(신설) 종류 S-p 가입자격: 집합투자증권에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	<p>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</p> <p>선취/후취판매수수료: 없음</p> <p>환매수수료: 없음</p> <p>보수: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40%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18%</p> <p>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2%</p> 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15%</p> <p>(신설) 종류 S-rp</p> <p>가입자격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가입하는 자</p> <p>선취/후취판매수수료: 없음</p> <p>환매수수료: 없음</p> <p>보수: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40%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13%</p> <p>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2%</p> 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15%</p>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정보 업데이트	-	업데이트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6. 나. (1) 수익증권 종류별 특징	클래스 신설	-	클래스 신설에 따른 설명 업데이트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

1. 기재 정정 사유:
 - 1) 클래스 신설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간이투자설명서 전반	클래스 신설	-	클래스 신설에 따른 정보 업데이트

집합투자규약 변경

1. 기재 정정 사유:
 - 1) 클래스 신설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클래스 신설	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</p> <p>1.-13. (기재생략)</p>	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</p> <p>1. -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14. (신설)종류 S: <u>(구분) 후취판매수수료 있음</u> <u>(수익자자격)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</u></p> <p>15. (신설)종류 S-p: <u>(구분) 판매수수료 없음</u> <u>(수익자자격)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</u></p>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	<p><u>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</u></p> <p>16. (신설)종류 S-rp: <u>(구분) 판매수수료 없음</u> <u>(수익자자격)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</u> <u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가입하는 자</u></p>
제 10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클래스 신설	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 제 2 조 제 6 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(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종류 A 수익증권 2. 종류 A-e 수익증권 3. 종류 A-i 수익증권 4. 종류 C 수익증권 5. 종류 C-e 수익증권 6. 종류 C-f 수익증권 	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 제 2 조 제 6 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(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종류 A 수익증권 2. 종류 A-e 수익증권 3. 종류 A-i 수익증권 4. 종류 C 수익증권 5. 종류 C-e 수익증권 6. 종류 C-f 수익증권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7. 종류 C-g 수익증권 8. 종류 C-i 수익증권 9. 종류 C-w 수익증권 10. 종류 C-p 수익증권 11. 종류 C-pe 수익증권 12. 종류 C-rp 수익증권 13. 종류 C-rpe 수익증권 (이하 기재 생략)	7. 종류 C-g 수익증권 8. 종류 C-i 수익증권 9. 종류 C-w 수익증권 10. 종류 C-p 수익증권 11. 종류 C-pe 수익증권 12. 종류 C-rp 수익증권 13. 종류 C-rpe 수익증권 14. <u>종류 S 수익증권</u> 15. <u>종류 S-p 수익증권</u> 16. <u>종류 S-rp 수익증권</u> (이하 현행과 같음)
제 39 조(보수)	클래스 신설	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(기존 클래스 보수 기재 생략)	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(기존 클래스 보수 현행과 동일) 종류 S 1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4.00</u> 2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2.70</u> 3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0</u> 4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5</u> 종류 S-p 1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4.00</u> 2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80</u>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	<p>3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0</u></p> <p>4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5</u></p> <p>종류 S-rp</p> <p>1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4.00</u></p> <p>2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30</u></p> <p>3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0</u></p> <p>4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5</u></p>
제 40 조(판매수수료)	클래스 신설	-	<p>(신설) ④ <u>판매회사는 종류 S 수익증권의 판매 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제 3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 <u>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(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 으로 나눈 금액)에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</u></p>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	<p><u>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다음 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u></p> <p><u>1. 종류 S : 3 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.15%이내</u></p> <p><u>⑥제 5 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제 5 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.</u></p>
제 41 조(환매수수료)	클래스 신설	<p>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종류 A, 종류 A-e, 종류 A-i: 30 일미만 이익금의 70%,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% 2. 종류 C, 종류 C-e, 종류 C-f, 종류 C-g, 종류 C-i, 종류 C-w: 90 일미만 이익금의 70% 3. 종류 C-p, 종류 C-pe, 종류 C-rp, 종류 C-rpe: 없음 	<p>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종류 A, 종류 A-e, 종류 A-i, 종류 S: 30 일미만 이익금의 70%,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% 2. 종류 C, 종류 C-e, 종류 C-f, 종류 C-g, 종류 C-i, 종류 C-w: 90 일미만 이익금의 70% 3. 종류 C-p, 종류 C-pe, 종류 C-rp, 종류 C-rpe, 종류 S-p, 종류 S-rp: 없음